

●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-7호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20일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

1. 처분대상

업종 (인허가번호)	업체명	대상	소재지
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 (제20170174419호)	유미네 한우	대표자 백*미	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19길 21(상동)

2. 처분사항

- 시정명령(2023. 3. 3.자)

3. 처분사유

-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정기 교육훈련(2021년도) 미이수
- 식육판매업[제2020-4-0406호]

4. 근거법령
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
-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의4제8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[별표14의2] 제9호

5. 고지내용

-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(단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)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내(단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)에 관할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처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전화: 053-589-2707)